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 규정 마련 〉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80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9
1.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9
2.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4.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폭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증가했음. 특히, 이러한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등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진단되고 있음.

한편,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

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나 경로당·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① 전기 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

현행	개정안
	<u>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u>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노인복지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경로당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8.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 또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9. 폭염 또는 한파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혹한기 또는 혹서기 등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③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감면된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u>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 감면의 기간, 감면의 내용 및 그 밖에 전기요금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결정은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은 법령이 아니라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을 통해 정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됨¹⁾.

한전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본공급약관에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할인제도²⁾ 및 초중고교 등에 대한 특례할인제도³⁾를 규정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도

1)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3)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2] 참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한전의 별도 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시설부담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관에 규정하거나 그 법적 근거를 지원대상에 따라 개별법에 각각 두는 것은 전기요금 감면 대상의 관점에서 근거의 명확성이 다소 떨어지고, 향후 전기요금 감면 제도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에어컨·냉장고 전기 소비가 급증⁴⁾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일시적으로라도 전기요금 감면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은 만 3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포함하여 기본공급약관 및 다른 개별법으로 시행 중인 전기요금 감면 제도의 대상과 근거를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고 에어컨·냉장고에 감면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4) 예를 들어, '23년 8월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진 전기 거래량은 역대 여름철 중 가장 많은 약 5만1천기가와트시(GWh)로 잠정 집계되었음.

국민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한전의 재무적 비용부담을 일부 완화하여 폭염·한파로 인해 생명·신체 안전에 위협을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전기요금의 감면은 한전의 수익 악화 및 경영 자율성에 대한 제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전기요금 감면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한전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와의 약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요금 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②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이나 하절기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다양한 전기요금 감면 제도가 시행⁵⁾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5)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과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재난 피해주민 전기요금 감면, 「에너지법」 제2조제7호의2 및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발급 등 여러 제도가 현재 시행 중임.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자료 1]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현황

(단위 : 천호, 억원)

구 분	계약종별		도 입	할인내용(한도)		호수 (22.12)	할인금액				
				기존	개정(16.12)		'18	'19	'20	'21	'22
장 애 인	주택용		'04. 3	월 8천원 한도	월 16천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691	1,311	1,276	1,272	1,224	1,437
상이유공	주택용		'04. 3			7	17	15	15	14	16
독립유공	주택용		'05.12			7	11	11	11	12	15
기초생활 수 급 자	주 택 용	생계 의료	'05.12	월 8천원 한도	월 16천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968	1,208	1,223	1,273	1,325	1,663
		주거 교육		월 4천원 한도	월 10천원 한도 (하계 12천원 한도)	282	19	84	171	249	364
	심 야		'08. 1	갑 31.4%,을 20%		18	30	28	29	30	40
차상위 계 층	주택용		'10. 8	월 2천원 한도	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202	204	205	217	201	239
	심 야	'08. 7	갑 29.7%,을 18%								
3자녀 이 상	주택용		'09. 8	20% (월 12천원 한도)	30% (월 16천원 한도)	586	938	877	886	849	915
대가족	주택용		'07. 1	1단계 낮은 요율 (월 12천원 한도)		281	415	383	358	321	328
출산가구	주택용		'16.12	-		603	469	728	769	741	804
사회복지 시 설	일반용		'07. 1	20%	30%	110	896	847	829	842	946
	주택용		'07. 1	21.6%							
	심 야		'08. 1	갑 31.4%, 을 20%							
생명유지	주택용		'07. 8	1단계 낮은 요율 (월 12천원 한도)	30%	20	22	35	24	27	33
총 계						3,775	5,540	5,712	5,854	5,835	6,800

자료 : 한국전력공사

[참고자료 2]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 현황

구 분	할인내용	적용기간
도 축 장 (도축허가 받은 사업장)	월 20% 할인	'15.1~'24.12
ESS 충전전력 (자가소비용 ESS 설치고객)	피크감축량 해당하는 기본요금 할인	'16.4~'26.3 ('17.5월 개정)
초중고교 (초중고교 및 유치원)	동·하계 6~50%(냉난방) 할인	'14.6 ~ ('17.1월 개정)
	기본요금 당월피크 적용	'16.12~ ('17.1월 신설)
미곡종합처리장 (정부지원 생산자단체 RPC)	월 50% 할인	'16.1 ~ ('18.1월 개정)
천 일 염 (천일염 생산설비)	월 20% 할인	'16.1 ~

자료 : 한국전력공사